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326-01

#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 3

2004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 및 영어로 각  
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반기문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Yuriy Boyko



외 교통 상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  
YOUTH

UNITED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KOREA



#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 3

외 국 통 상 부  
조 약 국



# 차 례

## 조약일반

1. 조약이란 .....6
2. 왜 조약업무가 중요한가 .....9
3. 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11
4.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국가간의 합의는  
무엇인가 .....13
5.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16
6. 협약·협정·의정서 등은 어떻게 다른가 .....17
7. 조약과 국내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다르다면 .....19
8. 양해각서란 무엇이고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
9. 재외공관에서의 조약체결 요령은 .....22

## 조약체결절차

10. 양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26
11. 다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28
12.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32
13. 우리말 조약문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36
14.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무엇이며 왜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38
15. 고시류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결되는가 .....39
16. 조약은 서명만 하면 발효되는 것일까 .....40
17. 전권위임장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43
18. 조약체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45



## 기관간 약정

- 19. 각 정부 부처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48
- 20.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 .....50
- 21. 기관간 약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체결되는가.....51
- 22. 기관간 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52
- 23. 기관간 약정 체결에 있어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사가  
왜 필요한가 .....54
- 24. 기관간 약정은 누가 서명하는가 .....55
- 25. 기관간 약정 문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56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업무

- 26. 지방자치단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62
- 27.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64
- 28.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절차는 .....65

## 조약서명시 유의사항

- 29. 조약서명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68
- 30. 조약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은 .....69
- 31. 조약서명식 순서는 .....70

##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현황 및 중요한 조약용어

- 32. 정부수립후 현재까지의 조약체결 건수는.....74
- 33. 조약체결의 최근 동향은 .....76
- 34.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주무부서는 .....77
- 35. 기억해 두어야 할 조약용어 중 중요한 것은 .....79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 조약일반



1. 조약이란
2. 왜 조약업무가 중요한가
3. 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4.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국가간의 합의는 무엇인가
5.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6. 협약·협정·의정서 등은 어떻게 다른가
7. 조약과 국내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다르다면
8. 양해각서란 무엇이고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 재외공관에서의 조약체결 요령은

# 1. 조약이란



고대의 조약문(석판)

Treaty between H.R.H. Silis, King of the Hittites and H.R.H. Ramses II, King of Egypt, 1269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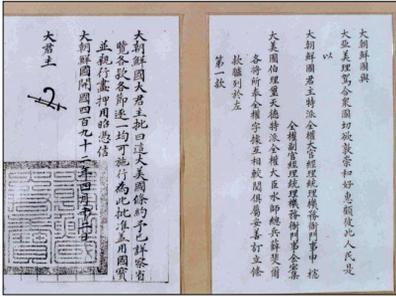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 중 중요한 것은 문서화되고 또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규율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릇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행위자인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약속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행위가 성실하게 지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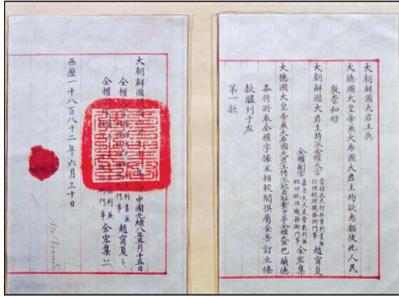
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일정한 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약속행위를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입니다.

조약은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간의 합의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도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미 우호통상조약(1882.5.22.)



조·독 수호통상조약(1882.6.30.)

## 조약은 문서형식에 의한 합의입니다.

조약은 문서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3항 참조]에서 규정(제3조 a호)하고 있듯이 예외적으로 구두합의(oral agreement)도 조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문서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조약을 문서형식에 의한 합의로 보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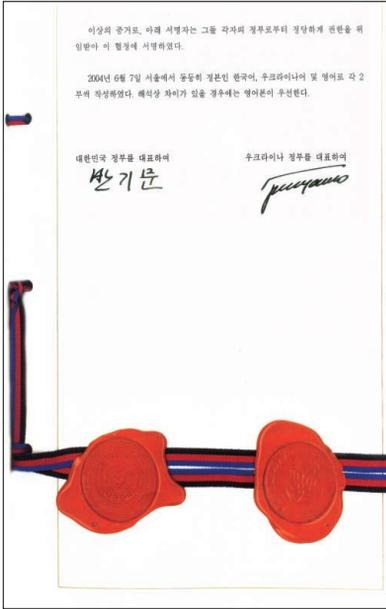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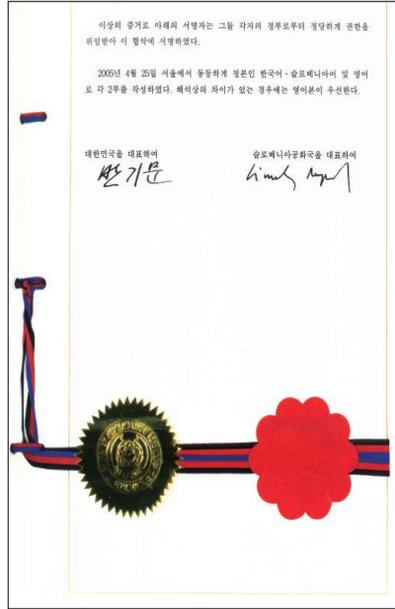
## 조약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입니다.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합의라고 모두 조약은 아닙니다. 조약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 주재 우리대사관 부지 구입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따라 부지소유권자인 미국 주정부와 부지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합의문서인 “신사협정”(gentlemen's



한·우크라이나 문화협정의 서명란  
(Wax & Seal 방식)



한·슬로베니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서명란  
(Wafer 방식)

agreement)도 조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4항 참조]. 이러한 합의문서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문서가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약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약은 ① 국제법 주체간에 ②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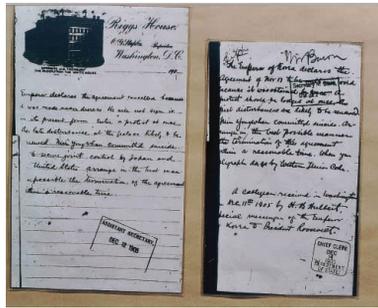
물론 조약을 이와 같이 간단히 정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4항 참조].

## 2. 왜 조약업무가 중요한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이루어지는 대외적 약속행위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에 신의와 성실로써 (in good faith)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회복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 전경



고종황제의 을사조약 무효선언 메시지(1905. 12. 11.)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어떤 국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체결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국가신뢰의 손상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약이란 법적인 권리·의무를 담은 합의문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조약체결업무란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사회에 법적인 약속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들은 일단 하나의 조약이 성립되면 이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로서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약체결은 국익과 국민들의 법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신중하고도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외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조약체결업무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조약문안을 심의·검토하고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범죄인의 인도여부는 단순히 호혜의 원칙 또는 정치적인 고려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재량적 판단 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주권국가가 조약체결을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업무가 얼마나 신중을 요하는 중차대한 일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3. 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조약이 어떻게 체결·적용·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들간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조약관계법 성문화작업이 구체화되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약의 체결절차, 조약의 효력, 조약의 적용·해석·개정·수정·무효·종료 및 정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조약업무를 이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약에 관한 국제법에서도 법의 흠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엔나협약이 미처 명문으로 규율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해서 이를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 해결을 미룬다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엔나협약이 간과한 부분은 무엇이



유엔 제네바사무소



UN 법률위원회

규율할까요?

이에 대하여는 비엔나협약 성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제관습법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행세하던 시대로부터 국제기구도 독립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는 오늘날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 조약뿐만이 아닌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체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법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국제사회는 1986년에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cluded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조약법 분야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비엔나협약이 큰 줄기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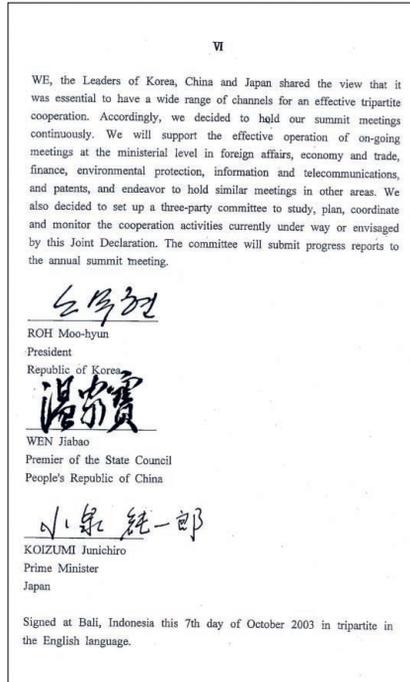
## 4.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국가간의 합의는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약이란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며 국제법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조약의 당사자들은 조약을 성실히 적용해야만 하고(pacta sunt servanda), 조약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사국간에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문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모든 형태의 합의문서를 넓은 의미에서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협정이란 정치가나 외교관들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언약하는 정책수행상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사협정에서 규정되는 약속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치적·도의적 의무의 이행은 협정당사자의 신의성실(good faith)에 기초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사협정의 당사자가 정부수반·각료 또는 대사일 경우에는 외관상 조약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약속행위로, 특히 국가는 자유롭게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문서는 2003년 10월 체결된 한·중·일 정상간 공동선언의 서명란이다.

① 당사자의 의도(intention)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단순히 정치적·선언적 성격의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도한 것인지를 여부입니다. 당사자의 의도가 협정문안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거나 협정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에 의해 표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의무관계의 구체성(specif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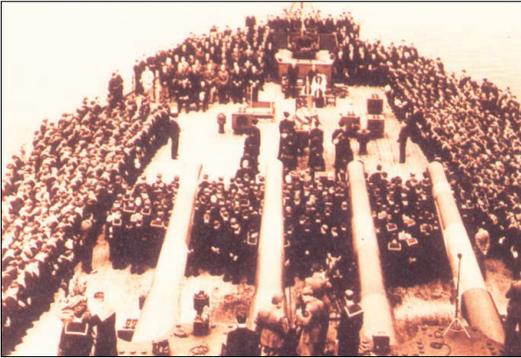
조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는 약속은 일응 의무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합의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내용의 중요도(importance)

안보, 민간항공, 관세, 무역, 인권, 특권·면제, 범죄인 인도 등 중요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거나 국내법적 차원에서 볼때 새로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합의는 일반적으로 조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경미한 사항은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의 상이군인을 미국 공공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합의나 지도 한 장을 외국에 판매하겠다는 약속은 조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강제적인 국제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규정 포함여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규정 포함여부, 유엔에의 등록여부도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사협정은 국제법 주체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또는 도덕적 약속인 신사 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위반이 신의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간에 체결된 대서양 헌장 사진은 신사협정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사진은 1941년 8월 14일 대서양상의 영국 군함에서 행해진 대서양헌장 서명 모습

성실의 원칙 및 정치적 또는 외교적 관계(political or diplomatic intercourse)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케 하여 상응하는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협정의 전통적 유형으로는, 1904년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 영국 외무장관과 폴 캄봉(Paul Cambon) 주영국 프랑스대

사 사이의 각서교환을 들 수 있습니다. 소위 영불협상(Entente Cordiale)을 성립시켰던 이 각서의 교환으로 독일에 대항하는 영·불 양국의 결속의 기초가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정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 간에 체결된 1941년 대서양헌장도 신사협정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출처: 김경창, 『근대외교사』, 1975, pp. 155-159].

이러한 신사협정의 예는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UN 주요 기관의 의석배분 등에서 신사협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구성시의 지역적 배분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의석 배분시에 이러한 신사협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회의장

## 5.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2005년 12월 13일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식(쿠알라룸푸르)

종래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국제하천의 이용과 국제행정·기술면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국제기구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국가를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간 조약의 체결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국가처럼 모든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즉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국제기구는 자신의 존재목적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완전한 행위주체로서 모든 조약의 체결이 가능하지만, 국제기구는 자신의 탄생근거이자 존재의 이유를 담은 설립 헌장(또는 규정)이 정한 목적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태평양상의 어느 나라와 「상호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UN식량농업기구(FAO)간 체결된 전문가 이용협정에 따라 니제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규, 조규자 의사 부부

## 6. 협약 · 협정 · 의정서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한표욱 주제네바 대사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고 촬영한 기념사진

우선 조약의 명칭으로 무엇이 쓰이고 있는지 한번 열거해 봅시다. 협약 · 헌장 · 의정서 · 교환각서 · 양해각서 · 약정 · 합의의사록 · 잠정약정 · 최종의정서 · 일반의정서 등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무려 39가지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각각의 조약체결 관행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른 조약의 유형을 도표에 담아 보겠습니다.

## 조약의 주요 유형

조 약 (Trea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li> <li>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한·인도 범죄인 인도조약(2005)</li> </ul>
규 약 (Covenant) 헌 장 (Charter) 규 정 (Sta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li> <li>예) 국제연맹규약, UN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li> </ul>
협 정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li> <li>예) 한·호주 자원협력협정(2005)</li> </ul>
협 약 (Con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조약에서 특정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li> <li>예)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2005)</li> <li>·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li> <li>예) 담배규제기본협약(2005)</li> </ul>
의 정 서 (Protoc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사용</li> <li>예) 한·루마니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2005),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1949)</li> </ul>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약의 서명절차를 체결주체간의 각서교환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li> <li>예) 한·칠레 사증면제 교환각서(2004)</li> </ul>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li> <li>·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li> <li>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관한 한-WTO 양해각서(2005)</li> </ul>

## 7. 조약과 국내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다르다면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는 주제하에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조치 없이 이행되는 국가(소위 monism)와 국내입법을 통해 조약을 이행하는 국가(소위 dualism)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이 속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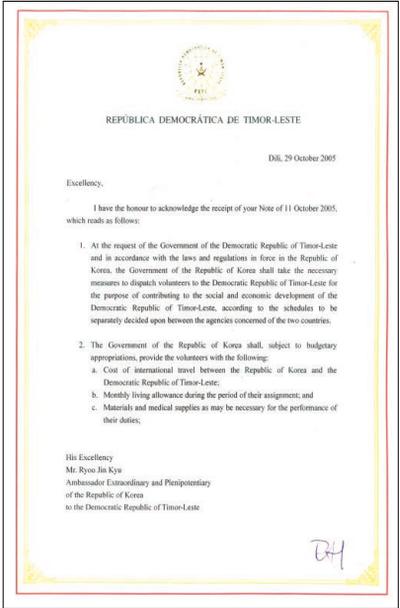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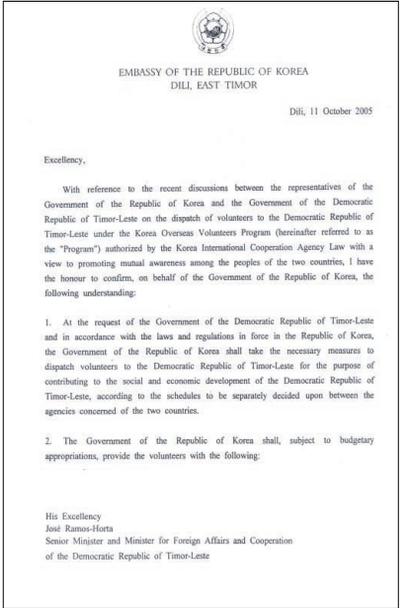
만일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조약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8항 참조].

### ※ 우리나라의 관련사례

1965년 2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3) 제5조 및 제7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1957) 제7조 및 제8조에 저촉됨을 지적하면서 상기 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왔음.

이에 외무부는 상기 조약이 그 당시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였고, 법제처는 외무부의 질의에 대하여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은 그 인적 규율 대상이 체약국 국민에 국한되어 있으나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는 모든 외국인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음.

# 8. 양해각서란 무엇이고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동티모르 봉사단파견 교환각서(우리측 제안각서와 동티모르측 회답각서)

원래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쌍방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조약이라는 엄격한 명칭 아래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원하는 바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양해각서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양해각서를 국내법(Case Act)에 따라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하원에 통보하고 매년 목록을 발간하는 한편, 통상

UN에 등록하고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은 이를 법적인 문서로 간주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협정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의 명칭이 조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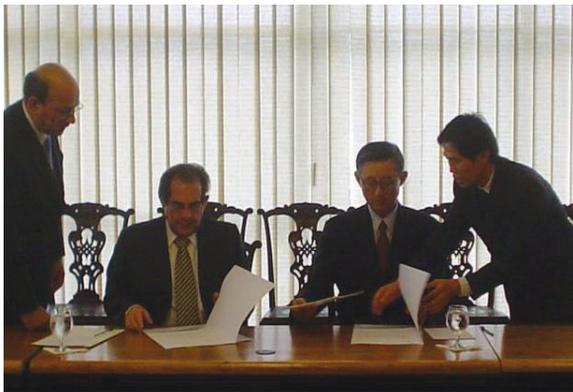
우리와 조약을 체결하는 여러 상대국의 관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데에서 오는 절차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간 또는 정부간 명백한 법적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조약으로 체결코자 하는 경우, 양해각서라는 명칭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9. 재외공관에서의 조약체결 요령은

재외공관에서의 조약체결 요령은 첫째, 상대국 조약체결 절차 확인, 둘째, 주재국에서의 서명시 서명 준비사항, 셋째, 기탁처 관련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① 상대국 조약체결절차 확인

대체로 나라에 따라 조약체결 절차가 상이한 바,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체결에 대한 기본원칙을 내각에서 승인받은 후 조약에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된 조약문안에 대하여 내각의 승인을 추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빈 방한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조약체결이 추진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에는 문안합의 후 서명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는데 최소 1개월이 소요되나 상대국가의 경우 문안합의 즉시 서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체결 교섭을 시작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재국의 조약체결 절차를 확인하고, 우리측 절차를 설명해 주어, 서명 예정일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안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전권 위임을 받아 한·브라질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하는 주브라질대사

## ② 서명 준비사항

주재국 서명자, 서명 예정일시, 장소 등을 서명식이 개최되기 전 늦어도 2주 전에 본부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서명식장 등은 통상 주재국에서 준비합니다.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보통 한국어·주재국어 및 영어의 3개 언어본을 원본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통상 주재국어본은 주재국에서, 한국어본은 본부에서 각각 2부 작성하며 영어본은 각측에서 1부씩 작성하는데, 주재국 보관용 한국어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조약용지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부로 송부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조약용지(분량은 조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실제 소요량의 2배수)를 외교행낭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부에 보내야 합니다.

## ③ 기탁처 관련업무

대부분의 다자조약에서는 서명·비준·가입·수락·개정 등 조약자체의 법적 변동사항을 접수하고 당사국들에게 회람·통보하는 기탁처(Depository)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탁처가 소재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다자조약과 관련하여 기탁처가 회람 또는 통보한 사항(문서 등) 및 관련조약의 변동사항 등을 인지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개정절차[12항 참조]에 의하여 다자조약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탁처 회람 또는 통보사항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 조약 체결 절차



10. 양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11. 다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12.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13. 우리말 조약문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14.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무엇이며 왜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15. 고시류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결되는가
16. 조약은 서명만 하면 발효되는 것일까
17. 전권위임장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8. 조약체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10. 양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2005년 9월 23일 서울에서 한·오만 이종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문화나 법체계 등이 상이한 2개 이상의 국가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법적 문서를 통해 서로 조정·합의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체결을 통해 그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상대국

과의 교섭은 물론,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내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약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먼저 어느 국가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서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상대국과 조약문안에 대하여 교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측이 조약 초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초안에 대한 우리측의 대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우리측 조약안을 확정하기 전에 외교통상부 조약국과 관련 부처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측 문안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교섭회담을 가지게 되며, 상대국과 조약문안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을 때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을 행하기도 합니다.

## 상대국과 조약문안을 확정합니다.

상대국과의 교섭을 통해 양국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되어 문안의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양측은 조약문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약문안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가서명(initialling)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가서명은 양측 대표가 자기 이름의 두문자(頭文字)를 조약문안의 각쪽 좌·우측 끝에 표시하는 형식으로 행합니다.

## 조약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합니다.

상대국과 문안이 확정되어도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야만 조약이 성립 체결될 수 있습니다[12항 참조].

## 상대국과 조약에 서명합니다.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서명권을 위임받은 우리 정부 대표는 상대국 대표와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으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조약체결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 일부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일부 조약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인 경우에는 서명 후 비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행입니다[12항 참조].

## 상대국과 비준서를 교환합니다.

어떤 조약은 서명 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약은 상대국과 비준서를 교환하여야만 발효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준서 교환대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약을 발효시키는 등, 보다 간소한 형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11. 다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2천여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는 UN총회 회의장에서 다자조약의 교섭·채택 등이 이루어진다.

### 해당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양자조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국제적 또는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정리하여 이에 참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조약문에 대하여 교섭 및 채택을 행합니다.

양자조약의 체결절차와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조약문의 교섭·채택 절차입니다. 양자조약에 있어서는 두 국가가 서로의 입장을 제시한 다음 교섭·절충하여 조약문을 작성하면 되겠지만, 다자조약은 관계국가가 수개국 또는 그 이상이어서 조약문 채택에 해당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의사결정방식(예를 들면 조약문 채택시 다수결 원칙이나 컨센서스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이송협약 가입초청서

① 조약문의 시안(initial draft) 준비  
 조약체결 절차가 시작되면 교섭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조약문의 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안은 각국 정부의 의견서를 기초로 분과위원회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마련되기도 하고 조약체결절차의 초기단계에 사무국에서 시안의 골자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② 교섭을 통한 조약문 작성  
 조약문의 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통하여 조약문을 작성해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약문 초안작성을 위해 문안기초위원회

(drafting committee)가 구성되어 1차적으로 문안을 심의·수정한 후 이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재심의케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가이익이 크게 대립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은 몇개의 소위원회가 분담하여 교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다시 다룹니다. 이러한 교섭과정에서는 때때로 공식그룹보다 비공식그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③ 조약문의 채택(adoption)

조약안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공식행위인 조약문의 채택은 관계 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국제기구의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지거나 조약의 채택을 위해 별도로 소집되는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채택은 관계 당사국이 적을 경우 만장일치(unanimity)제로 이루어



2005년 10월 14일 SUA협약 개정을 위한 런던 외교회의시 FINAL ACT에 서명하는 모습

지기도 하나 많은 다자 조약에서는 2/3 다수결 제도나 절대 다수결 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관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수결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투표 없이 이해그룹별로 의

견 차이를 조정하여 타협안을 미리 만든 다음 의장이 선언을 하고 이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된 것으로 하는 컨센서스 방식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자조약이 채택되면 동 문안을 채택한 국제회의의 결과를 규정한 최종의정서(Final Act)에 교섭 수석대표가 서명합니다.

### 조약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합니다.

조약안이 채택되어 문안이 확정되면 관련부처는 조약안과 그 국문 번역문을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송부하여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12항참조].

### 조약에 서명합니다.

※ 양자조약의 경우와 동일

### 일부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 양자조약의 경우와 동일

### 기탁처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 등을 기탁합니다.

다자조약은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의 비준서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기탁처(depositary)를 지정하여 이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합니다. 「수락(acceptance)의 조

건하에」 또는 「승인(approval)의 조건하에」 서명을 한 다음 행하는 수락 또는 승인의 경우 그리고 어떤 다자조약의 원서명자가 아닌 국가가 후에 그 다자조약을 수락·승인하거나 가입(accession)하는 경우의 수락서·승인서·가입서의 기탁도, 비준서의 기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합니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 등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공관의 공관장 또는 간부직원이 직접 기탁처에 수교하고 기탁일, 발효일 등 관련사항을 본부에 보고합니다.

#### ※ 조약에 대한 서명과 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의 구분

흔히 조약에 대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문의 확정을 위한 의사 표시 또는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교 회의에서 다자조약문의 채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서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다자조약 문안의 채택에 대한 동의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다자조약에 대한 조약문안의 확정 또는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다자조약 문안의 채택에 대한 동의 표시인 서명은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조약에 대한 서명과는 달리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임장(credential)만으로 충분하다.



1975년 4월 23일 핵무기 비확산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장면

## 12.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외교통상부			
주 110-051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독립동 95-1 외교통상부 /전화 (02-2100-7507-10) /전송 (2100-7965)			
등록번호	조약과-4441		대통령
등록일자	2005. 10. 13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
결재일자	2005.		
시행일자	2005.	신기문	이리진
관련기관 할조여부			공개구분
협조 기관			
수신자	내부결재	발신자	
제목	"한-우크라이나 해운협정" 체결 및 공포		
2005년 10월 10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표제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정부대표가 표제협정에 서명함.			
2. 표제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첨부 : 협정안(국무회의 안건) 및 공포안 각 1부. 끝			

한·우크라이나 해운협정 대통령 재가문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 법적으로 기속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조약체

결절차를 취해줄 것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약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약문안 최종점검

외교통상부 조약국은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하기 전에 조약문안을 다각도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① 조약문의 내용이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② 조약문의 내용이 국내법이나 다른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가?
- ③ 조약문의 내용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 등 국회의 동

의를 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④ 조약문이 조약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
- ⑤ 조약문의 국문본(또는 국문번역문)을 포함한 각 언어본이 충실하게 준비되었는가?

이러한 최종점검 작업이 완료되면 조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제처 심사

조약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법제처의 조약안 심사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4조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등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안도 이러한 법령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심사는 보통 “2주일이상” 소요됩니다.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조약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 헌법 제89조는 조약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심의 전에 차관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차관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차관회의 개최일 1주 전에 해당 조약안을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에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 대통령재가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재가에는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느 조약안이 2005.11.1.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로부터 대통령 재가까지의 일정을 달력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조약문안 확정 가서명: 11. 1.
- 외교통상부 조약국 검토: 11. 2.~9.
- 법제처 심사 : 11.10.~24.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국무회의 상정: 12. 1.
- 차관회의 심의: 12. 8.
- 국무회의 심의: 12.13.
- 국무총리 재가: 12.14.~20.
- 대통령 재가 : 12.21.~27.

위의 일정 예시를 통해서 11.1. 문안이 확정된 어느 조약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는 데까지는 약 8~9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소요시일이 다소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또한 어떤 조약은 서명 후에 그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

우도 있습니다[14항 참조].

### 조약 공포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체결된 조약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를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7항 참조].

또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리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자조약의 자동 개정

다자조약의 자동 개정이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다자조약에 있어 기술적 발전 및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명, 비준 등 복잡한 개정절차 없이 관련 국제기구의 내부절차 또는 일정 당사국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 문안이 채택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발효되는 간이절차를 의미합니다.

자동 개정된 다자조약 또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탁처인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다자조약의 자동개정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정부는 조약당국에 의한 심의 및 관계법령상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찬반의견 또는 개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수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합니다.

## 13. 우리말 조약문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우리말 조약문은 다수국간 조약인 경우에는 번역본(translated text)이 될 것이며(예: UN 해양법협약), 2개국간 조약일 경우에는 정본(authentic text)일 때도 있지만 번역본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 문안이 당해 조약의 정본일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번역본일 경우에도 우리 글로 표현된 조약문은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외국어로 된 조약문과 대비하여 법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외국어로 된 조약문을 소위 ‘해석’ 한다든지 ‘직역’ 한다든지 함으로써 뜻이 안 통하는 우리말 조약문을 작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언급한 것을 토대로 우리말로 된 조약문 또는 기타 국제적인 합의문을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외국어로 된 조약문이 담은 뜻을 가감하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표현을 긴 표현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나.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써 자연스러움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복수를 단수로 또는 각각 그 반대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 다. 자연스러운 우리 글인 동시에 법문식 표현을 쓸 것

우리 국내법령에서 쓴 법조문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라. 수식 또는 형용을 위한 구·절의 내용이 긴 경우, 그 수식·형용의 대상이 되는 말과 타요소(같은 문장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것

특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긴 형용사절, 부사절 또는 목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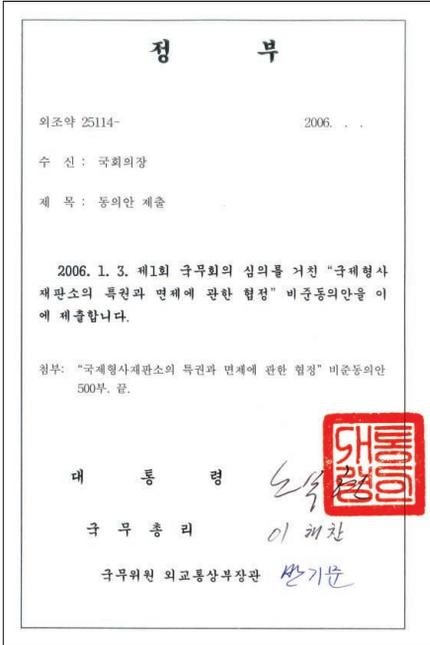
이 들어가는 경우, 그 주어와 절의 서두 부분이 혼합되거나 절의 후미부분과 동사가 잘못 연결되어 의미상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문장의 구성이나 구두점 사용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 필요한 경우 ‘의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의역’이라도 할 것**

이는, 우리말로써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문으로서의 의사전달(communication)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 14.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무엇이며 왜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우리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입니다.

국회의 동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조약체결 행위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민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특권면제협정 가입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비준동의 요청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가 비준행위로써 완료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는 서명 후 비준 전에 행하게 되며, 서명만을 요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그 체결에 대한 사후동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그 조약에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당사국간 서로 통보함으로써 당해 조약이 발효된다는 조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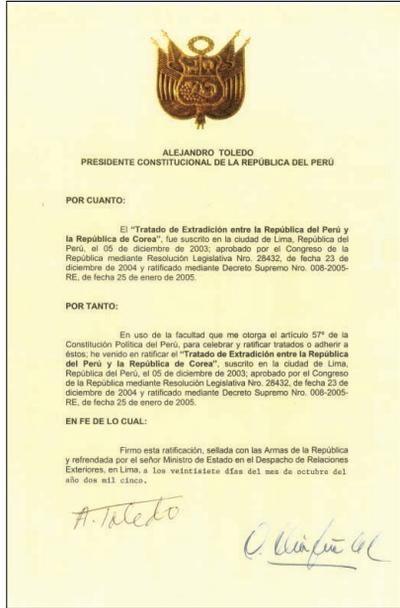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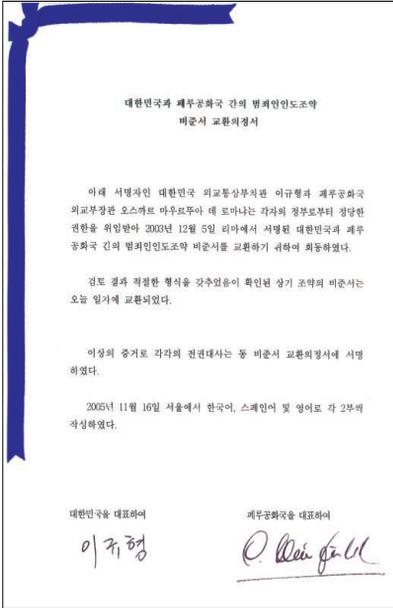
## 15. 고시류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결되는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국내적 절차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였습니다. 그런데, 모(母)조약의 실시·집행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체결되는 시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이나 모조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등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내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이 체결절차를 취하고 그 중 특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을 우리는 실무편의상 “고시류조약”(告示類條約)이라 칭합니다.

### 고시류조약은 아래의 경우에 이용됩니다.

- ① 이미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  
예)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외교통상부 고시 제2004-502호): 이의 모협정은 2000년 11월 12일 체결된 “한·요르단 EDCF차관 협정”(조약 제1537호)
- ② 조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부 수정하기 위한 합의.  
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외교통상부 고시 제2004-497호)

# 16. 조약은 서명만 하면 발효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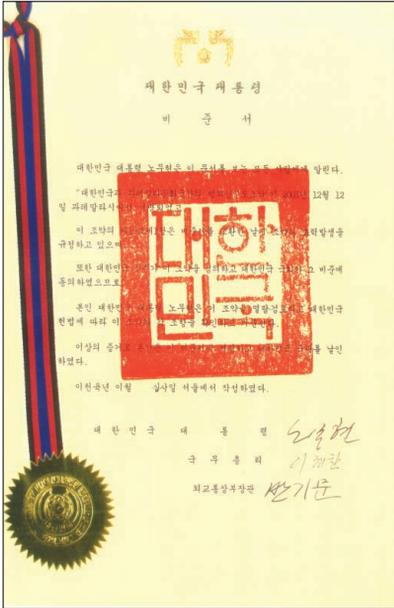
한·페루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 교환의정서 및 페루측 대통령 비준서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은 당해 조약이 규정한 방법 또는 교섭국간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그와 같이 규정되거나 합의된 날짜에 발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비준이 필요한 조약

양자조약의 경우,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를 교환하는 경우에 비준서 교환일자, 비준서 교환일부터 일정시일 경과한 시점 또는 비준서 교환을 확인하는 의사록(procés-verbal) 작성일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의 발효조항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한·과테말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대통령 비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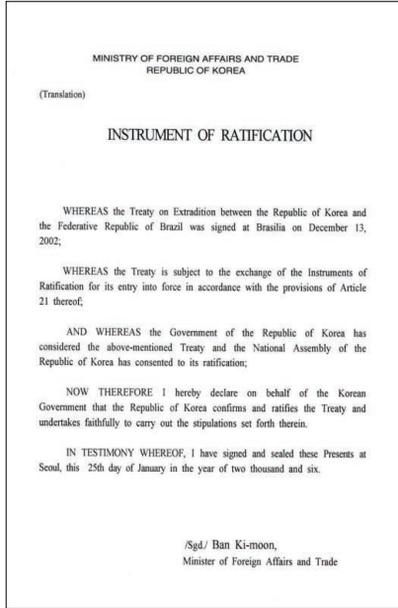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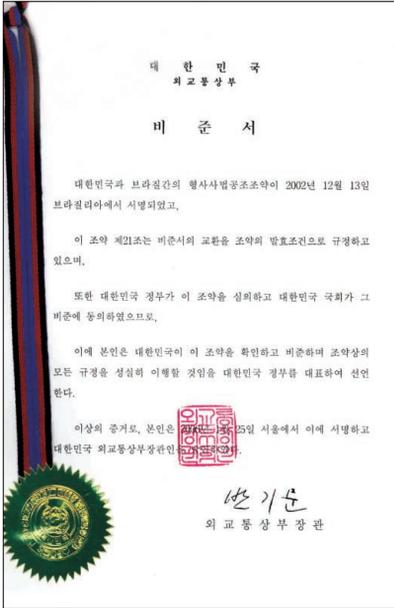
하는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1957. 3. 구주공동체 창설에 관한 Rome협약 등), 일정 수의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6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개월 후 발효).

## ② 비준이 필요없는 조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명 후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있으나 국가의 기속적 동意的 최종표시로서 서명 자체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신속한 효력발생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약식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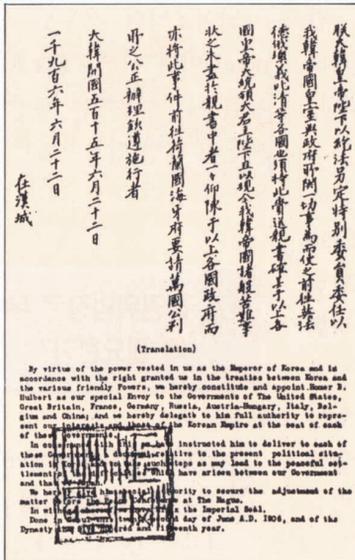
(treaty in simplified form)이라 칭합니다(예를 들면, 미국의 행정협정).

이와 같은 약식조약의 경우에는 모든 서명권자들이 서명을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식조약에 있어서는 서명이 조약문의 인증(authentication)행위인 동시에 국가의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意的 표시의 최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약식조약의 경우도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이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 각 당사자의 각서나 서한을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한 일자 중 나중 일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브라질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 비준서(국·영문)

## 17. 전권위임장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906년 6월 22일 고종황제가 험버트 박사를 친서전달 특별위원으로 임명한 위임장

전권위임장 제도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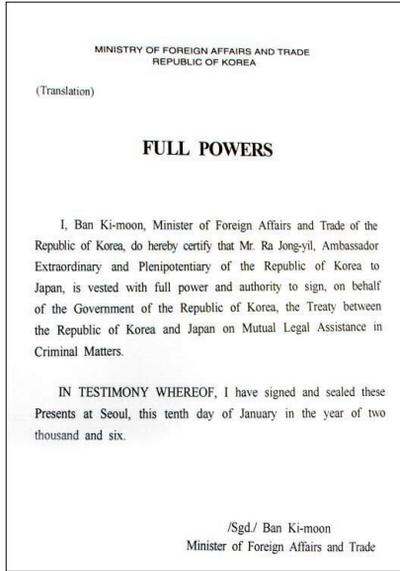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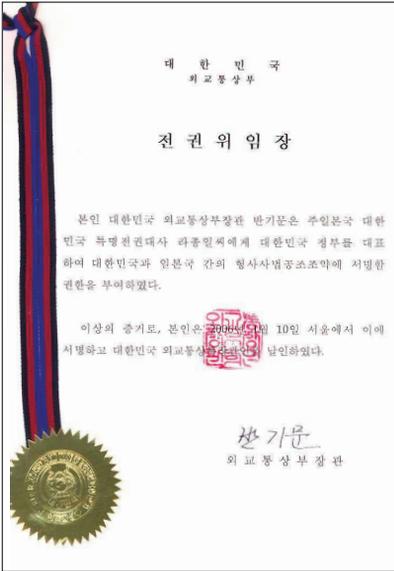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소위 “Big Three”)은 조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을 채택(adoption)하는 경우에만 전권위임장 제시가 불필요합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다자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아닌 조약문의 채택에만 동의하는 데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상 신임장(credential)이라는 별도의 위임장이 사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상대국 주한대사가 우리와의 양자조약에 서명할 경우에 전권위임장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대사가 접수국 정부와의 조약에 서명하는 때에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경우에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여 이를 제시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행입니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조약문안의 교섭·채택이나 인증을 위하여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하도록 임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전권위임장 제도란 본래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군주시대의 유물이며, 군주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조약의 교섭을 위하여 전권위임 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 및 통신수단이 매우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대표에게 발급되는 전권위임장에는 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서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대표의 이름, 발급권자의 서명 및 외교통상부장관인 날인 등이 표시된다. 위 사진은 라종일 주일대사에 대한 한·일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전권위임장(국·영문)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서명을 위임한 전권위임장

페르미노프 연방우주청장에게 한·러시아 우주 기술협력협정 서명을 위임한 러시아의 전권위임장

## 18. 조약체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으나 국내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무시한 경우 조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조약이 국내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항 참조] 특히 조약이 국내 헌법규정(예를 들면, 국무회의 상정, 국회의 동의)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신의·성실에 기하여 체결된 조약을 상대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절차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 기관간 약정

# 한·루마니아 IT협력 MOU 체결

Semnarea Memorandumului de intelegere pentru Cooperare in Sectorul IT intre Coreea si Romania

일시 : 2005. 10. 18 (화) 장소 : 외교통상부



19. 각 정부 부처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20.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
21. 기관간 약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체결되는가
22. 기관간 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3. 기관간 약정 체결에 있어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사가 왜 필요한가
24. 기관간 약정은 누가 서명하는가
25. 기관간 약정 문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19. 각 정부 부처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조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이라 했는데 어떤 국제합의는 체결의 주체가 대한민국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정부기관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결주체가 “...부”, “...처” 혹은 “...청”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정부의 각 부처(청)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하부기관은 조약체결권이 없습니다. 각 부처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과 관련 업무 범위 내에서 약정(이를 일반적으로 「기관간 약정 agency-to-agency arrangement」이라 칭함)을 체결할 수 있기는 하나 이렇게 체결되는 약정에 대하여는 그 조약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정부 조약체결상의 관행입니다.



2005년 10월 18일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와 루마니아 정보통신부간 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모습

다만, 고시류조약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협정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 모협정의 근거하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 약정은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조약의 체결주체가 국가나 정부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는 국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준조약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 조약의 체결권과 조약의 서명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때때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닌 정부부처의 장이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기관의 장이 서명을 할 수 있다면 그 기관에도 조약체결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 ‘전권위임장’을 해당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이다.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헌법 제73조),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그 서명자에게 조약체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하는 것이다.

## 20.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

이제 기관간 약정의 실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기관간 약정은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되는 조약이 아닌 **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의 유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된 모조약(母條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시행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자조약(子條約)으로서의 기관간 약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A간 문화협정”이라는 정부간 협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과 A국 학자의 교류를 촉진토록 되어 있다면, 관련 정부기관(문화관광부)은 이와 같은 학자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국의 유관 부처와 학자의 교류를 위한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조약(母條約)에 “……을 도모한다.” 등과 같은 방침적 규정이 있다면 자(子)의 성격의 약정(約定)인 기관간 약정은 “……을 언제 어떻게 이행하고 그리고 누가 이행하는가”와 같은 구체적 시행계획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조약 없이 관계부처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율하는 기관간 약정이 있습니다. 앞의 예를 다시 인용한다면, 비록 “한·A간 문화 협정”과 같은 모조약으로서의 정부간 조약은 없지만, 관련 정부기관이 한국과 A국 간의 학자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학자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1. 기관간 약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체결되는가

우리는 앞서 조약의 체결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그 절차를 열거해 보면 「체결필요성 판단 → 교섭 → 문안합의(가서명) →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진행(법제처심사,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및 필요시 국회의 동의) → 서명(비준)」의 순서로 조약이 체결되고 이어 공포됩니다. 그러나 기관간 약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관간 약정은 다음의 절차만을 취하면 됩니다.

첫째,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처는 먼저 그 약정의 체결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외교통상부 관계국에 이를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일단 약정 체결의 방침이 서면 상대국 유관부처와 교섭을 행합니다. 교섭은 우선 양측이 약정의 초안(draft)을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단일의 약정문안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다시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문안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단일의 약정문안이 완성되면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만나 약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는 종료하는 것입니다(회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한 방법이나 재외공관을 통한 방법으로 상대측의 서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 기관은 그 체결사실을 외교통상부 조약국 및 관계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외교통상부 조약국은 그 약정이 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의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이러한 기관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 22. 기관간 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기관간 약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기관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관업무 범위 내의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첫째, 국가 간의 법적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앞의 예(제20항)에서 든 “한국과 A국간의 학자교류 약정”에서 A국 학자가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약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특권과 면제는 국가가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기관간 약정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은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국과 A국간의 학자교류 약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 봅시다. 만약 이 약정에 A국내 한국학연구소 설립비용으로 해당기관이 30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면 이는 분명히 해당 기관의 재정능력을 넘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의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간 약정에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기관간 약정에서 규정한다면 이는 정부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즉,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해당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약정의 이행을 위해 타부처까지도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간 약정을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또는 국가차원의 재정적 부담사항을 배제하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약정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This Arrangem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 이 약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이용가능한 재정수준과 가용인력 그리고 각국의 법령에 따른다  
(All th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unds and personnel an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 23. 기관간 약정 체결에 있어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사가 왜 필요한가

앞에서 살펴 본 기관간 약정 체결절차에서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심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 항목[22항 참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간 약정의 내용으로 답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처 중에는 과거 자신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 대외적 책임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킨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사의 취지는 조약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이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에 협조하고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약업무의 대외적 일관성과 체계를 유지하며 문제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은 의뢰받은 조약이나 약정의 문안을 심사하고 그의 체결절차를 밟거나 체결토록 안내하며 또 필요한 법적 해석을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체결의 필요성, 문구의 정확성 등)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법적 검토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전검토는, 전문담당부서의 시각에서, 약정문의 용어나 문장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약정 중에 철자가 틀린 어휘가 없는지, 국문본과 영어본이 일치하는지 등의 관점에서 충실을 기한 후 외교통상부에 공식 의뢰하여야 하겠다.

## 24. 기관간 약정은 누가 서명하는가

기관간 약정의 서명은 해당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해당 기관의 고위직인사가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간 약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상대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가 기관간 약정에 서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명전권대사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외교사절로서 조약 체결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부를 대표하여 “조약”에 서명할 수 있으나, 정부 어느 부처를 대신하여 기관간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적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약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양국 관계부처간의 방문계획이 없어서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 부처간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21항 참조] 우편으로 서명문서를 교환하거나,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을 통하여 서명문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체결을 행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8일 멕시코시티에서 산업자원부와 멕시코 경제부간에 “한·멕시코 광물자원협력 MOU” 및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약정”을 체결 후 악수하는 모습

## 25. 기관간 약정 문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국가간 또는 정부간 조약의 경우에는 제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관간 약정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제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첫째,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은 “Arrangement” 또는 “Implementing Arrangement”를 쓰고,

둘째, 모조약의 근거가 없는 기관간 약정에는 “Plan”, “Programme” 등을 씁니다.

약정의 체결주체는 정부간 합의나 국가간 합의가 아닌 기관간의 합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 of the Republic of X”로 합니다.

약정은 전체적으로 전문(前文), 본문(本文) 그리고 최종조항(最終條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에는 체결주체를 명시하고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의의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본문은 조문형식을 취하되 Article 대신 Paragraph를 사용하거나 그냥 숫자를 조문 앞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합니다. 최종조항은 “Signed at (place) on the ( ) day of (month year),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 ) and the English languages, both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로 합니다.

※ 기관간 약정의 문안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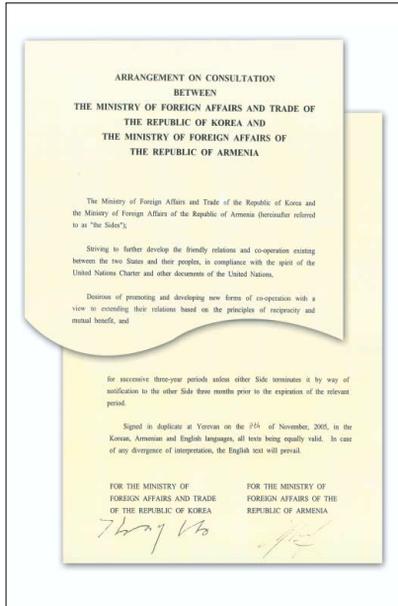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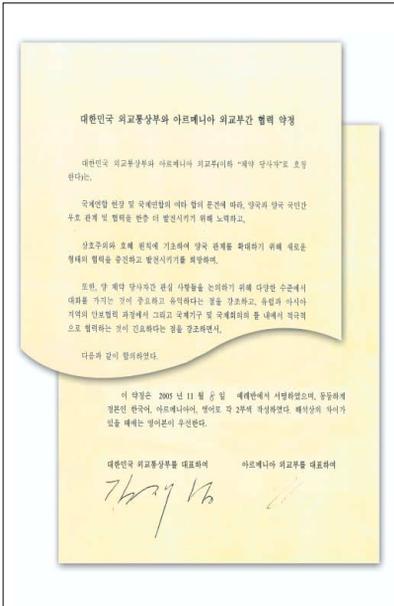
제 목 : Arrangement 또는 Plan, Programme

전 문 : 체결주체, 의의 및 필요성.

본 문 : 구체적 규정( 단원형식: 단원 앞에 항목표시 번호 사용)

최종조항 : Signed at \_\_\_\_\_ on the \_\_\_\_day of (month year),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_\_\_\_\_ and the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valid.

서 명 난: For the Ministry of ( ) For the Ministry of ( )  
of the Republic of Korea of ( X )  
(~ 부(처)를 위하여) (~부(처)를 위하여)



2005년 11월 체결된 우리나라와 아르메니아 외교부간 협력 약정(국·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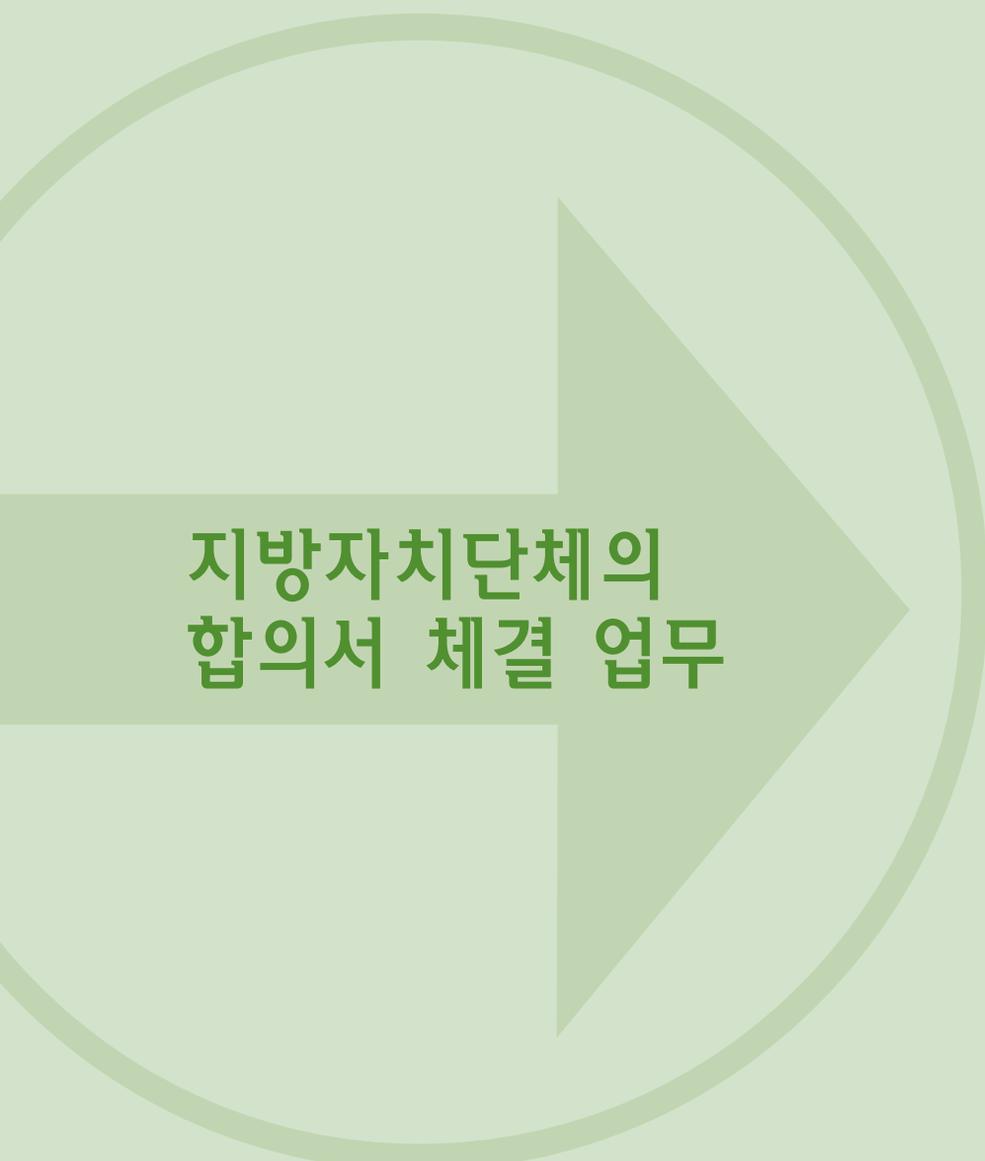
### 조약 용어와 기관간 약정 용어 비교표

조 약	기관간 약정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rangement
Article	Paragraph
agree	accept, approve, decide, consent
Have agreed as follow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Have come to the following arrangement
agreement, undertaking	arrangement, understanding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uthentic	having equal validity, being equally valid
be entitled to	enjoy
bound to be (or by)	covered by
clause	paragraph
commitments	arrangements
conditions	provisions
continue in force	continue to have effect
done	signed
enter into force	come into operation, come into effect, become effective
mutually agreed	jointly decided
obligations	commitments
Parties	Sides, Participants, Signatories
Preamble	Introduction
rights	benefits
have the right	be permitted to
reserves the right	may
shall	will
terms	provisions
undertake	decide, carry out
undertakings	understandings



2004년 7월에 개최된 한·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모습.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과 독일 이주난민국간에 의견 교환 후, 최종문안 합의 및 서명은 외교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2005년 3월에 “조약 제1722호”로 발효되었다.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업무



- 26. 지방자치단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27.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28.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절차는

## 26. 지방자치단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6월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발점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업무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적인 합의서 체결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상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 한정되며, 국가 내의(특히 연방국가인 경우) 주정부 등의 경우에는 해당국 헌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그 체결이 가능합니다(예컨대, 캐나다의 퀘벡주는 1965년 프랑스와, 2004년에는 우리나라와 교육관련 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특히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대외관계의 1차적 책임자는 연방정부이며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인근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을 구속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사항인 경찰, 교육, 문화, 방송, 수자원보호, 환경보호 등에 한정되며 조세 등 연방정부의 권한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국가인 경우 지방정부의 조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이미 고시류조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간의 협정에서 특정 지역협력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관간 약정 체결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대외교류 및 상업적 활동 등에 있어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는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7.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기속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임된 범위 또는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외적 “합의서”의 체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까.

### 첫째, 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등의 명칭[6항 참조]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체결주체에 있어서도 “국가”나 “정부”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둘째,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즉,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재산을 관리하여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내에서만 대외적 합의서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에 전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파견하여 국제통상, 자매결연, 주한공관 접촉 등 각 시·도의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에는 이들 자문대사들이 업무지원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8.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및 경제·기술협력을 내용으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대체로 아래의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해당 합의서의 체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먼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교류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와 아울러 합의서의 내용이 국내법(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상충되지는 않는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문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일단 체결필요성이 인정되면 상대방과의 각종 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의향을 타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문에 담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 문안을 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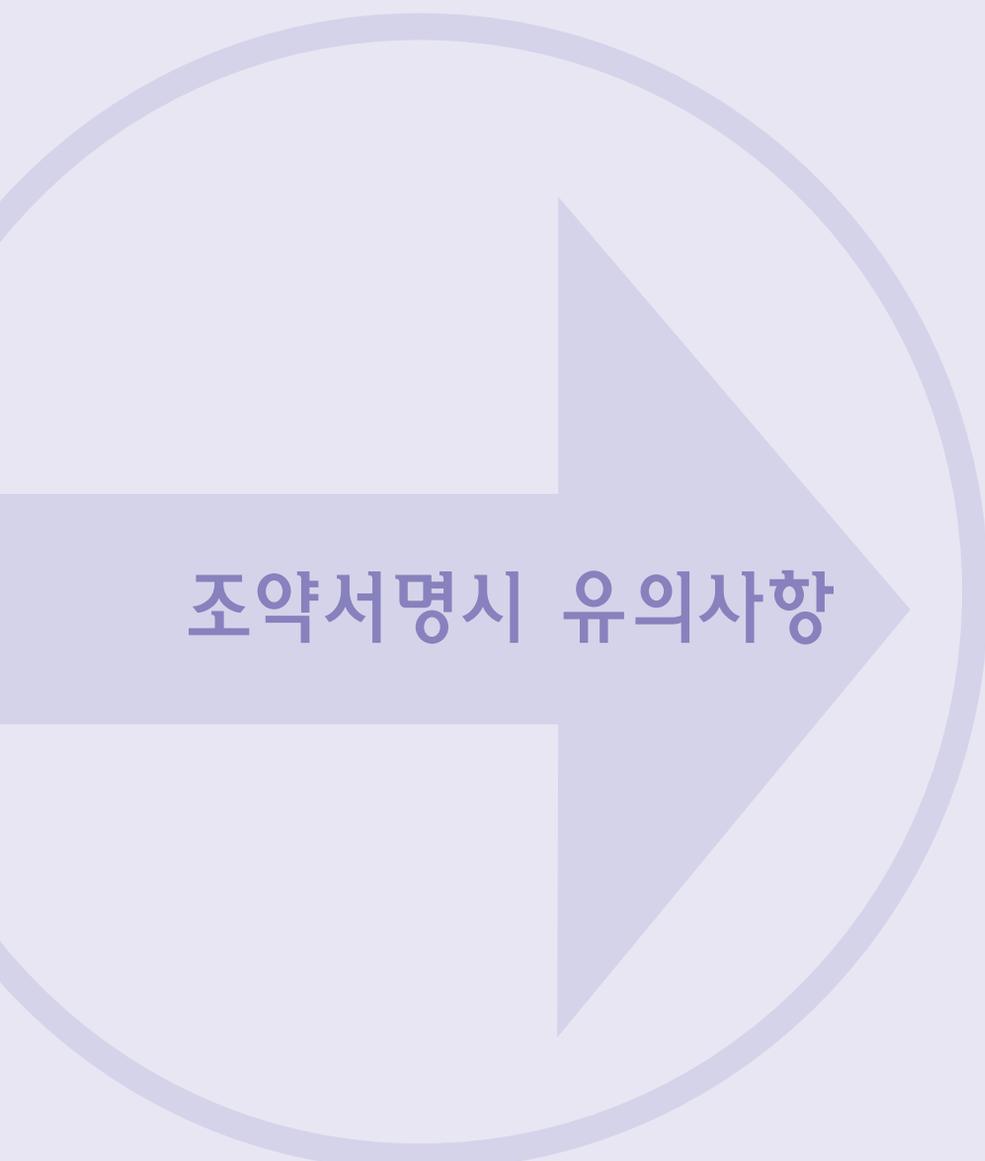
### 상대방과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합의서의 문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이때 합의서의 내용이 기존 조례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조례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장면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조약서명시 유의사항



- 29. 조약서명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30. 조약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은
- 31. 조약서명식 순서는

## 29. 조약서명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조약서명시 준비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이블
- 서명자 착석용 의자 [2개]
- 두 나라의 국기 및 명패
- 서명을 위한 필기도구(만년필) 및 받침 [각2개]
- 압지(Blotter) [2개]

조약서명시 기본 준비물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꽃장식이나 서명 후 축배에 사용될 샴페인 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을 위하여 준비된 테이블 모습



한·싱가포르 FTA 서명식이 종료된 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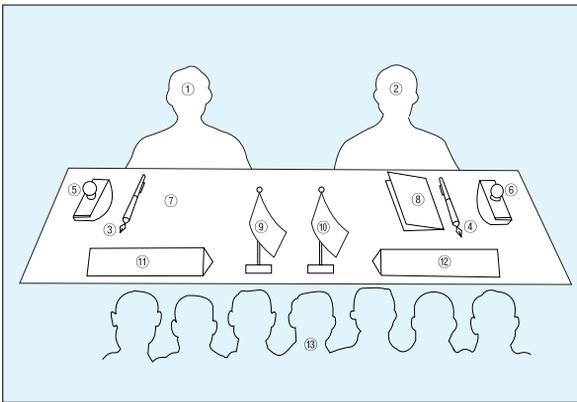


## 30. 조약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은

조약 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 배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식장에서는 우리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왼쪽에, 상대방 서명자가 오른쪽에 위치하여 양측 관계 직원이 각각 서명자의 옆에서 서명을 보좌합니다.

서명식장에는 국기와 명패 등을 사진과 같이 바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실·국장 등이 배석하도록 하고 또한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합니다.



- ①상대국 서명권자
- ②한국의 서명권자
- ③④만년필
- ⑤⑥압지 ⑦⑧조약문
- ⑨상대국 국기
- ⑩한국 국기
- ⑪상대국 국명 명패
- ⑫한국 국명 명패
- ⑬신문·TV등 언론 관계자



2005년 6월 9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식

## 31. 조약서명식 순서는

조약서명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기관간 약정이나 그 외의 합의서 체결시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서명식장을 준비합니다.

각 서명권자 위치의 탁자 위에 자국 보관용 조약문을 놓습니다.

### 둘째, 양측 서명권자가 입장합니다.

이때 서명보좌관은 각각 서명권자 약간 뒤편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 셋째, 양국 서명권자는 각각 자국 보관용 조약문 정보상의 서명란(왼쪽)에 서명합니다.

아랍어, 히브리어와 같이 Text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씌어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오른쪽에 서명합니다.

### 넷째, 서명보좌관은 서명된 양측의 조약문을 교환합니다.

### 다섯째, 서명권자는 상대국 보관용 조약문 서명란(오른쪽)에 서명합니다.

아랍어, 히브리어본은 왼쪽에 서명합니다.

### 여섯째, 서명이 끝나면 양측 서명권자는 조약문을 교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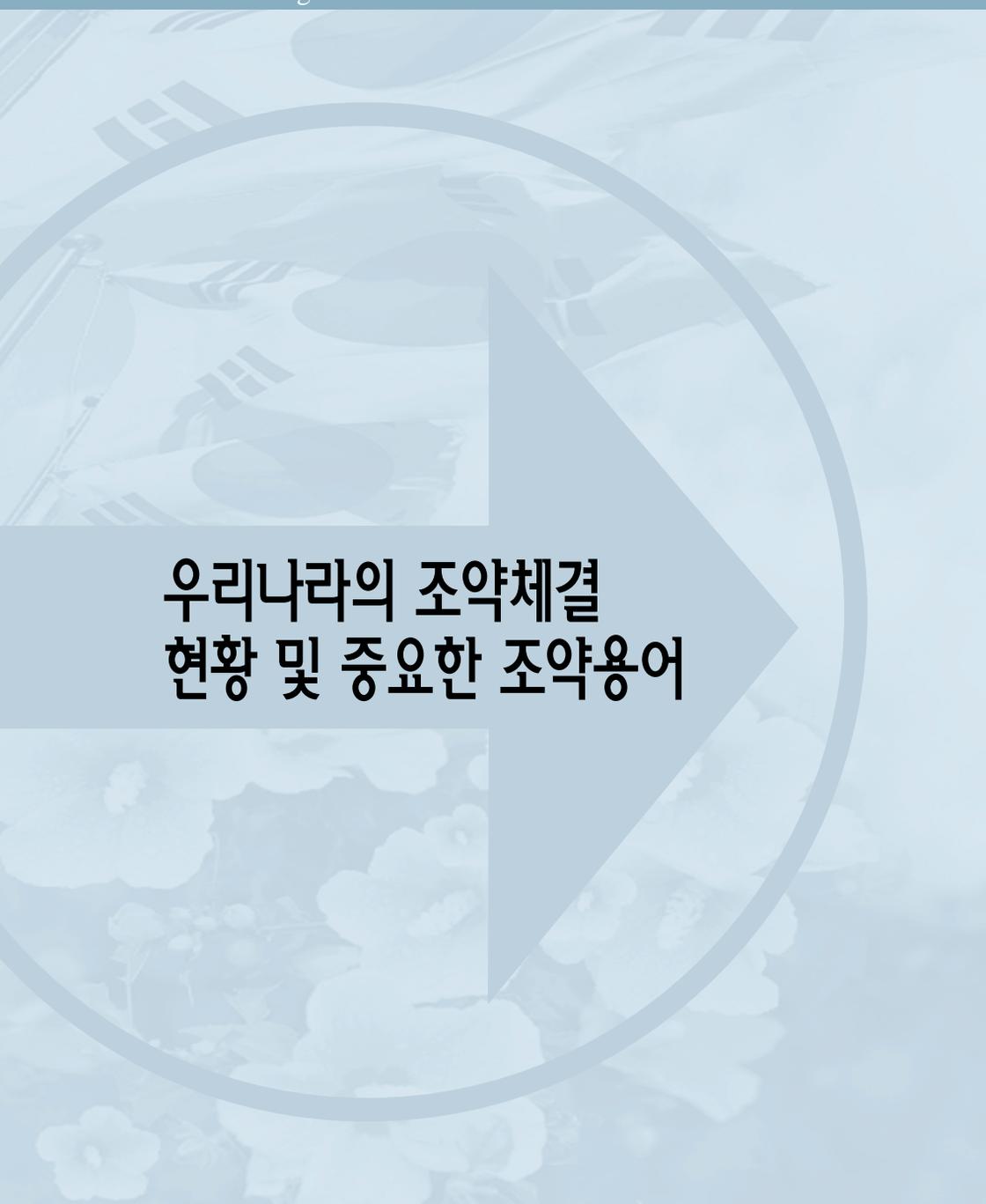
그리고 조약문 교환이 끝나면 약수와 아울러 사진촬영 등을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후 축배(샴페인)를 들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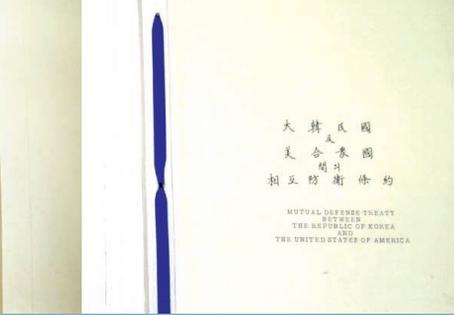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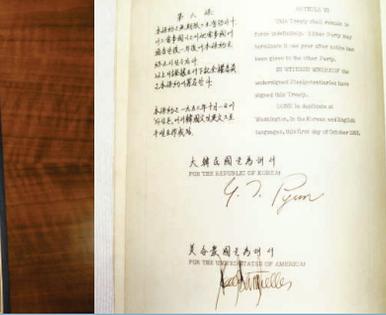


2004년 8월 31일의 한·이스라엘 해운협정 서명식 및 조약문 교환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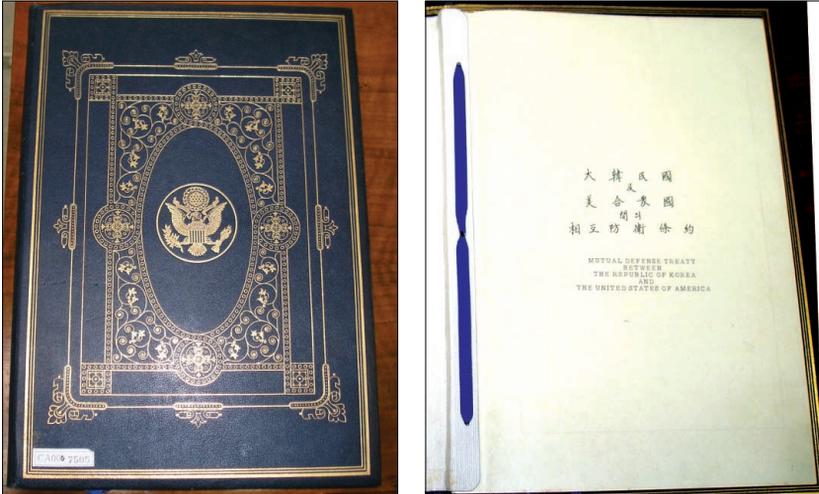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현황 및 중요한 조약용어



- 32. 정부수립후 현재까지의 조약체결 건수는
- 33. 조약체결의 최근 동향은
- 34.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주무부서는
- 35. 기억해 두어야 할 조약용어 중 중요한 것은

## 32. 정부수립후 현재까지의 조약체결 건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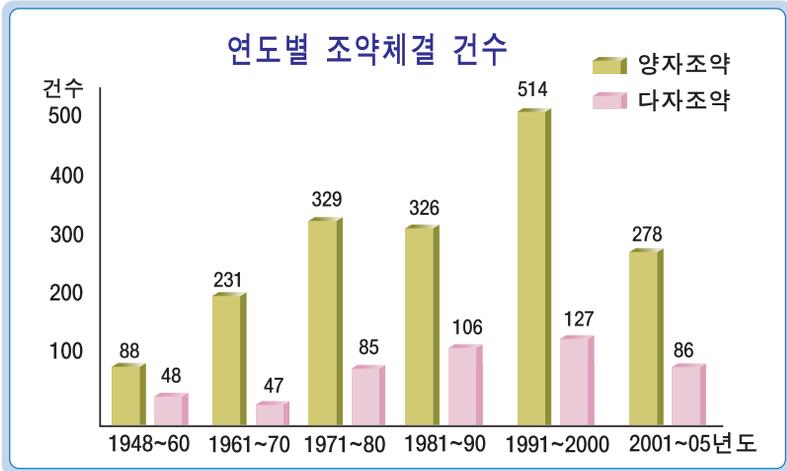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원본의 표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05년 12월까지 대한민국이 서명하여 발효된 조약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265건의 조약이 있습니다. 이 중 양자조약이 1,766건이고 다자조약은 499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간 우리 정부 초창기에 체결한 양자조약이 88여건인데 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체결한 조약이 278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요즘에는 조약체결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조약체결 건수 증가는 탈냉전 후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과거 정치·군사 분야 위주의 외교활동이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 등의 분야로 기능화·전문화·다변화 되는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 다자조약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 체결대상분야가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한편 매 건당 다루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도 조약체결현황

구 분	양자조약	다자조약	계
건 수	72	18	90

#### 양자조약

구분	발효
경제/운송	42
사법공조/사증	8
문화/관광/사회보장	6
군사/안보	3
기 타	13
누 계	72

#### 다자조약

구 분	발효/가입
국제범죄(테러)/환경	4
금융기구	4
무역/통상/산업	2
보건/해양법/어업	4
기 타	4
누 계	18

### 33. 조약체결의 최근 동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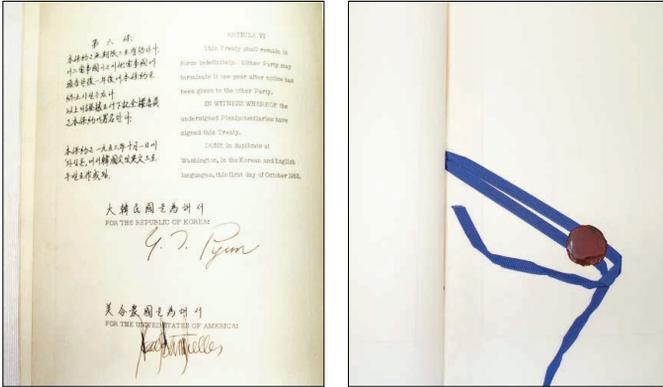
조약체결의 최근 동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체결건수의 급증입니다. 앞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1948~60년의 13년간 체결한 양자조약이 80여건에 불과한 데 비해 2005년 한해에 체결한 양자조약이 7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양자조약에 있어서 체결분야가 다변화되고, 국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종과세방지협약,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과 같은 경제분야의 조약체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자조약에 있어서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된 조약체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되면서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우리 정부는 통상·환경·인권·군축 등 다자조약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34.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주무부서는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서명란과 봉인 모습

“정부조직법” 제31조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약업무는 외교통상부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내에서 조약 및 국제법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는 조약국의 업무는 범정부 차원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도모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법적·제도적으로 기여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국익 확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조약국 내에 3개과(조약과, 국제협약과, 국제법규과)를 두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조약과

- 양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양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 양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 양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석
- 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교섭 및

그 시행

-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 기타 조약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국제협약과

- 다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다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및 가입
- 다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 다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석
-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 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 ③ 국제법규과

-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집의 편찬, 발간
-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조 약 과 : ☎ 02-2100-7507~10 (Fax) 02-2100-7965

국제협약과 : ☎ 02-2100-7518~20 (Fax) 02-2100-7966

국제법규과 : ☎ 02-2100-7527~29 (Fax) 02-2100-7967

## 35. 기억해 두어야 할 조약 용어 중 중요한 것은

다음은 조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문 조약용어 중 중요한 것 15개로서 조약체결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 정본 (Authentic Text)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시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으로 조약문 정본으로 포함되며 조약당사국의 국어본도 원칙적으로 정본이 됩니다.

### 부속서 (Annex)

조약문은 크게 제목(title), 전문(preamble),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다시 주된 조문(articles), 최종조항(final clauses), 부속서 (anne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란 본문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역시 본문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로서 보통 기술적인 규정이나 보충사항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조약의 조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조약 본문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지거나 그 체제가 산만하게 되므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를 부속서로 따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부속서도 본문과 일체(integral part)를 이루며 따라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 가서명 (Initialing)

조약 교섭자가 서명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또는 조약이 중요하여 후에 정부 내지 서명권자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가서명의 형식은 성명의 머리글자로 행하는 것이며 주로 양자조약 또는 당사자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가서명은 보통 실무교섭대표(국장·과장, 공관의 대사·공사급)가 행하며, 가서명과 함께 Record of Discussion 또는 Protocol of

Negotiation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인증 (Authentication)

조약문이 작성(elaboration)된 다음에 조약문을 채택(adoption)하고 그 조약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끝맺는 절차로서, 가서명이나 서명의 방식으로 행하여 집니다. 인증된 조약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수정은 재교섭을 의미합니다).

### 합의의사록 (Agreed Minutes)

주로 외교교섭 또는 조약 체결시 표명된 의견이나 상호 합의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추후에 조약해석을 위한 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합의를 수정하거나 완성시키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그 예로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군사협력의 계속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1954)을 들 수 있습니다.

### 비준 (Ratification)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준의사의 표시는 양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의 교환으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의 기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 수락 (Acceptance), 승인 (Approval)

수락이나 승인은 주로 다자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의 한 방법으로 비교적 근래에 와서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조약의 원서명자로서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와 조약의 원서명자가 아닌 국

가가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수락의 조건하에” 또는 “승인의 조건하에” 서명한 후 행하는 전자의 경우는 “비준” 그리고 해당 조약 채택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이나 승인은 “가입”과 각각 동일한 의미와 효과를 지닙니다. 다만 미국·프랑스·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수락이나 승인을 비준보다 간편하고 또한 덜 격식을 차린 형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는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입 (Accession)

다자조약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가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조약상의 규정(가입규정)에 따라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느 국가가 일단 “가입”에 의하여 조약의 당사자가 되면 원당사자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 유보 (Reservation)

다자조약 체결시(서명·비준·가입·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그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효력을 자국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당해 조약에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하는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기탁 (Deposition)

다자조약에 있어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즉, 가입·비준·수락·승인)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 국가들 사이의 비준서 등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depositary)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기는 것입니다.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당해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기구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체약국 중 1개국의 정부가 수탁처의 역할을 하며, 각 당사

자가 수탁처에 제출하면 수탁처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등을 접수·보관하고 그 접수 사실을 각 체결국에 통보하는 등 조약의 중앙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 등록 (Registration)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조약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둠으로써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고자 UN헌장 제102조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UN의 어떤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습니다.

### 무효 (Invalidity)

조약의 무효라 함은 조약체결에 있어 국제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이 체결국의 “근본적으로 중요한(of fundamental importance) 국내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제46조 2항) [18항 참조]”,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조약 체결대표의 권한이 국내법상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47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Amendment)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규정을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조약에 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됩니다.

개정을 의미하는 어휘로는 “Amendment”와 “Revision” 두 가지가 있으나 이들이 상호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전자는 조약의 개별적 규정에 관계된 경우에 사용하고, 후자는 조약 전체의 일반적인 재심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Modification”이란 용어도 있는데, 이는 일부 당사자간의 조약내용 변경행위를 의미하는 때도 있었지만(예를 들어 1885년 Berlin 일

반조약의 일부 당사자들이 1919년 St. Germain-en-Laye 협약을 체결하여 Berlin 조약을 “변경”한 것), 요즈음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의 교섭과정 중 조약초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수정”에 해당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조약의 당사자들이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폐기’는 양자조약에서 사용되며 ‘탈퇴’는 다자조약에서 사용됩니다. 대다수의 조약은 폐기·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폐기나 탈퇴가 행하여질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각 당사국은 그 합의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기(Pacta sunt servanda) 때문에 국가가 그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동의를 부여한 조약을 타당사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승계 (Succession)

병합(Annexation), 국가분리(Secession) 등에서와 같이 일정한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의 국가(피승계국가)로부터 타국가(승계국가)로 인계되는 것을 국가승계라 합니다. 승계국가는 새로운 영토 관할권자로서의 배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피승계국가의 법적 상황이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법적 생활기초를 갖춘 국가의 영토를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 알기 쉬운 조약업무

---

2006년 3월 일 인쇄

2006년 3월 일 발행

편집 및 발행

외교통상부 조약국 조약과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95-1

정부중앙청사별관

전화 (02) 2100-7507~10

FAX (02) 2100-7965

인 쇄

필코문화사(2269-2466)

---



**외교통상부 조약국**

[www.mofat.go.kr/2100-7507~10](http://www.mofat.go.kr/2100-7507~10)